

	가정통신문	부서담당: 행정실 전화번호: TEL: 021) 6493-9546 FAX: 021) 6493-9600 홈페이지: http://skoschool.com
中國 上海市 閔行區 華漕鎮 聯友路 355號 (郵)201107		

제19기 상해한국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교원을 위원으로 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운영위원 후보가 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교육 전반에 대한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2025.3.27.(목) ~ 2025.4.10.(목)(12:00)까지이니 관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입후보 등록서를 전자우편(prettytoy81@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구 분	인원	자 격	임기	비고
학부모위원 (초등 3명, 중·고등 3명)	6명	-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단, 위원 선출 시 위원의 구분으로 학교급을 구분하는 것일 뿐, 임기 중 학생의 학교급이 변동될 경우 학부모위원의 자격은 유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2년 (2025.5.1.~ 2027.4.30.)	*운영위원(12명) 학부모위원6명 교원위원4명 지역위원2명

※입후보자가 6명(초등 3명, 중·고등 3명)일 경우 무투표 당선됨

※입후보자가 6명이더라도 학교급별 인원이 초과할 경우(예:초등 2명, 중·고등 4명)일 경우 투표(2025.4.16.예정) 진행함

2025. 3. 27.

상 해 한 국 학 교 장 (직인생략)

<참고>

공무원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